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0
----------	-----------

제안년월일 : 2018년 12월 1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 1. 수정이유

- 시행일이 2019년 1월 1일로 정해졌으나, 통과 후 적용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 골자

- 부칙에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참고사항 : 생략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다둥이 행복카드(서울시 거주 2자녀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요금의 감면) ① (생 략)</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다둥이행복카드(서울시 거주 2자녀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u></p> <p>3. ~ 4. (생 략)</p> <p>③ ~ ④ (생 략)</p>	<p>제20조(요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u></p> <p>3. ~ 4.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